



제3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 출연 병행 허용 등〉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450호)

2022.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 출연 병행 허용 등	4
2.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시 공모방식 적용 등	8
※ 참고자료	
1. 건축물 미술작품 지역별 기금출연 현황(연도별)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원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1. 9. 6.

다. 회 부 일 : 2021. 9.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회화·조각·공예 등) 설치에 사용하게 하여, 작가들의 창작활동 진흥, 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그런데,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공공예술 증진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입주지연 등으로 결국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박탈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미술작품 선정에 있어 건축주와 작가 간의 불공정한 계약 및

관행(대행사의 과도한 영업 등)으로 인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미지급 되고, 신진 작가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식되어, 작품의 다양성과 미술작품의 품질 하락을 초래한다는 우려와 기설치 된 미술 작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작품이 분실, 훼손, 노후화 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나.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건축주가 신진작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미술작품 다양화를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건축주가 작가와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미술품 설치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 출연 병행 허용 등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변경하고(안 제9조제2항),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 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u>미술작품의 설치에</u>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 ----- ----- ----- ----- ----- <u>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에</u>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u>미술작품의 설치에</u> 사용하는 대신에 <u>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u> 출연할 수 있	② ----- ----- ----- ----- <u>건축물 미술작품</u> ----- ----- <u>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u>

다. <u><신 설></u>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도지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u> ----. ③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제2항에 따른 기금으로의 출연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축물 미술작품-----제2항에 따른 기금-----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 ----- ----- -----
--	--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건축주로 하여금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음.¹⁾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요〉

- 목 적 : 건물과 도시공간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도시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개 요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0.1% ~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5조)
- 연 혁
 - 1972년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권장사항(건축비의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1995년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건축비의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2000년 : 설치비용 경감(건축비의 0.1% ~ 1.0%)
 - 2011년 : 선택적 기금제 도입(설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가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먼저, 안 제9조제2항은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지역문화진흥법」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당초 동 규정은 지역문화의 진흥보다는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진흥에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각 지역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으로 분산·적립되도록 하기 보다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당초의 이 법 취지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출연금 중의 일부는 지역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등에 활용하고 일부는 정책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활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임.²⁾

또한, 2011년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 이래 출연금으로 적립된 기금 총액 488억원 중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의 출연금이 82%³⁾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금을 해당 지역별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선택적 기금제도 출연금 현황(2011~2021)>

(‘21. 6월 말 기준, 백만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월말
금액	48,780	145	902	1,010	1,144	2,716	3,181	4,761	8,138	12,162	10,651	3,97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의안번호 911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3) 건축물 미술작품 출연 총 적립금 : 447억원(2011~2020)

·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가 전체 적립금의 82% 차지(447억중 367억원, 2020. 12월 기준)

다음, 안 제9조제3항은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 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비용이 큰 건축물에서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면 건축물 미술작품 미설치로 인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이 경우 건축주는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용 증가나 입주 지연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 출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임.

개정안은 이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이라는 양자택일 외에 추가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 출연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2.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시 공모방식 적용 등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동주택의 건축주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9조의2(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가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u> <u>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u> <u>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u> <u>4. 공동주택의 건축주(기숙사는 제외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

개정안 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대하여 공모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술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중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민간 건축주에게 공모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아가, 공모제도의 활용 여부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제도 도입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주로 하여금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고, 공모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모제도는 현재도 일부 시·도에서 조례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공모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술품 심의 시 가점 부여 등을 적용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78

4) 미술품 공모 제도 실시 중인 지자체 사례 : 경기도(「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무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임의규정.) 등

참고 1

건축물 미술작품 지역별 기금출연 현황(연도별)

(2021년 6월 말 기준 / 건,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1	건수	-	1	-	-	-	-	1	-	-	-	-	-	-	-	-	-	2
	금액	-	131	-	-	-	-	14	-	-	-	-	-	-	-	-	-	145
'12	건수	2	-	-	1	-	-	3	1	-	-	2	-	-	-	-	-	9
	금액	56	-	-	143	-	-	598	19	-	-	86	-	-	-	-	-	902
'13	건수	-	3	-	1	-	-	2	4	1	-	2	2	-	2	-	1	18
	금액	-	39	-	30	-	-	157	308	60	-	28	100	-	53	-	235	1,010
'14	건수	1	3	-	-	1	-	1	5	1	2	-	3	-	1	-	-	18
	금액	27	109	-	-	26	-	15	582	60	129	-	108	-	88	-	-	1,144
'15	건수	4	3	1	2	3	-	-	10	2	-	3	-	-	2	-	1	31
	금액	566	440	22	113	202	-	-	887	62	-	147	-	-	119	-	158	2,716
'16	건수	3	3	4	1	1	2	3	12	1	1	3	2	-	2	4	-	42
	금액	806	87	122	87	16	144	102	1,214	22	49	70	34	-	76	352	-	3,181
'17	건수	5	3	1	2	-	-	5	17	-	-	4	2	-	2	3	-	46
	금액	1,259	246	13	275	-	-	360	1,402	-	-	380	101	-	126	417	-	4,761
'18	건수	16	4	3	9	2	-	3	30	1	-	2	-	2	2	2	-	76
	금액	1,908	439	141	1,127	238	-	242	3,424	21	-	102	-	57	151	288	-	8,138
'19	건수	18	10	1	5	-	-	1	45	3	2	2	-	1	2	3	-	94
	금액	2,480	1,285	354	629	-	-	29	5,959	109	272	197	-	14	310	389	-	12,162
'20	건수	11	6	-	7	-	-	1	53	-	-	1	1	2	1	-	2	86
	금액	1,228	1,009	-	911	-	-	105	6,976	-	-	15	15	115	84	-	93	10,651
'21	건수	4	2	1	2	-	2	-	18	2	1	1	-	1	-	1	1	37
	금액	441	65	107	431	-	221	-	2,087	174	51	106	-	83	-	82	24	3,970
누계	건수	64	38	11	30	7	4	16	198	12	6	14	11	9	9	18	5	459
	금액	8,771	3,850	759	3,746	482	365	1,010	23,451	527	501	915	366	420	653	1,651	405	48,780
비율	건수	14%	8%	2%	7%	2%	1%	3%	43%	3%	1%	3%	2%	2%	2%	4%	1%	100%
	금액	18%	8%	2%	8%	1%	1%	2%	48%	1%	1%	2%	1%	1%	1%	3%	1%	1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